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하도급업체의 부실시공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체가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이거나 또는 준공이 되고 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어떤 행정조치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시공을 한 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 조치하는 것인 바,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의계약 대상자격 유·무 관련 질의

〈질 의〉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용역·제작·구입 등의 5백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견적 입찰에 참가자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용역 등의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 신〉

□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계약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방계약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법률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에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은 수의견적제출의 참가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경쟁입찰 참여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조합은 단체수의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6호 다목)에 한정하여 조합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협동조합의 계약자격요건은 사실상 상실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용역·물품계약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령해석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중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의 의미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부실벌점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며, 이 경우 부실설계·감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의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 이므로 발주청의 부실측정 및 부실벌점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시공업체 입찰 선정건 관련 질의

〈질 의〉

자치단체의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에 최근 5년간 『노인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시공실적』이 단일공사로 4억이상 있는 업체로 된 경우, 『○○의료원의 노인병동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중 장례식장 부분이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공고된 경우라면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현재 발주하는 공사에 장례식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5. 법인명칭의 변경일자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대한 질의

〈질 의〉

□ 상호변경과 관련하여

- 전자입찰 공고일 : 2006.10.13
-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06.11.06(월) 09:00~2006.11.16(목) 18:00까지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06.11.17 14:00
- 법인상호 변경일시 : 2006.11.16(주주총회 회의종료시간 09시30분)
- 해당법인 투찰일시 : 2006.11.16(15:44:06 투찰)
- 법인상호 등기일시 : 2006.11.17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입찰한 경우 해당법인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일(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투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법인의 변동사항은 법인등기부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명칭변경이 입찰일(투찰일) 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6. 보도블럭 철거비용 누락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상주차장 확보공사에 있어서 기존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신설보도블럭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을 철거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하는데, 보도블럭 철거공종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고 폐기물상차만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 경우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의 철거가 당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공종이고 설계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7.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여부

〈질 의〉

- ○○시 청소를 민간에게 위탁 대행 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관내 6개 업체에 위탁대행하고 처리는 관내 1개 업체에 위탁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2개사가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시 시설관리공단 계량기를 통과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에 2005년~2006년도까지 허위계량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부당이득금(편취금액) 발생
- 현재 부당이득금(편취금액)에 대하여 현재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조사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형사처벌은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당이득금(편취금액)은 ○○시에서 환수 할 것임.
- ○○시와 위탁대행 계약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기업), 재활용신고업(△△기업)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 처분만 하고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와 동법시행규칙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등) 별표2의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제외 하고자 하는데 정당한 행정처리 방법인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제재 대상에 해당되며 귀 질의 경우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개의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유의사항 관련 질의**〈질 의〉**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유형에 시설물관리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 차량사무소시설관리용역이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2(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용역)와 관련하여 차량사무소시설관리용역 발주시 입찰방법 가운데 일반용역 적격심사제 또는 2단계 경쟁입찰중 적합한 시행방법

〈회 신〉

- 행정자치부의 회계통첩에서는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계통첩에서 의미하는 단순노무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는 “단순노무용역”을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으로 규정
- 다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공공기관 외주근로자의 경우 시장 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공사에서도 동 대책에 따라 시장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계약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 실적신인도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19호) 부칙에서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삭제되는 실적신인도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 실적신인도 적용은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19호) 부칙에 “이 기준은 2006년 1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별지5〉 내지 〈별지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동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의 평가는 종전 기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06년 11월 20일 이후 적용되므로 귀 질의 경우 실적신인도 부분은 2006년 11월 20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실적제한 관련 질의

〈질 의〉

○○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용역을 제한경쟁입찰로 공고하였으나 제한실적을 단일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의 공연석 2,500석이상 건축물 연면적 42,143㎡이상으로 제한한 경우

□ 질의 1) 건축물연면적은 제한 기준에 충족되나, 동일건물이 아닌 A공연장 1,500석, B공연장 1,000석의 실적이 있다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질의 2) 입찰공고문상 제한항목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의 실적” “6개월이상 2,500석이상의 공연장 관리 실적” “2,500석이상의 공연장을 포함한 건축물 연



면적 35,000㎡이상의 시설관리용역경험”“위의 실적이 단일계약으로 된 실적보유업체”등으로 중복적인 제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규정이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접촉되는지 여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여야 하는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는 것은 단일실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정하는 1건 규모이상의 실적을 충족해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여러건의 실적을 합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간 또는 각 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실적제한 이외의 다른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중복제한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1. 수의전자견적입찰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소액수의 전자견적입찰에서 입찰공고문상에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 나. 최근 3년내 지방자치단체 PC유지보수용역 연간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 라. ① 위 요건을 갖춘 업체는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남도내에 본사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당해용역의 유지보수용역 이행 실적의 범위 및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

(준공)된 용역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나”항에 규정된 “최근 3년내 지방자치단체 PC 유지보수용역 연간 계약실적” 증명서를 우리도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공고내용으로 볼 때 위 ③항에서 제시한 “유지보수용역 연간 계약실적”을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을 제출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 용역에 있어서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실적인정기간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대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귀 질의 경우 완성된 용역실적이 아닌 이행중인 계약체결실적을 제출한 경우라면 입찰 공고문에서 규정한 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2. 지체상금 부과여부 질의

〈질 의〉

국가기관(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등)과 지방자치단체간 체결된 연구용역에 대하여 쌍방간의 “계약서상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요율을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지체상금의 부과는 계약상대자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지체상금에 관한 부과를 명시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사급자재의 수급방법변경 및 계약단가변경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5억미만의 시설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주요자재 중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수급방법 및 계약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 질의1) 해당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춘 소수의 제강업체의 주문 생산일정이 공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 질의2) 해당품목의 생산규격이 조달품목이나 물가정보를 근거로 산출될 수 없는 주문생산규격임이 확실한데 근거가 없는 단가산출로 인해 계약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에 견적에 의한 단가변경 및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 질의3) 해당품목의 시방기준은 KSD3566을 적용하나 기준에 적합한 규격을 생산하지 않는 품목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2,3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당초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동 조건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소요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 산정, 품셈·일위대가표등의 변경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공사자재의 시방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술용역의 분담이행 참여비율 산정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적격심사에 있어 적용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방법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4호)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바, 질의하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 방법은 발주대상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분담한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는 것임

15. 혼재된 공사의 집행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급수공사가 일부 포함된 상하수도설비공사(급수공사 제외)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급수공사 대행업자만으로 제한할 수 있나?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시행령 제20조 각호 규정에 의거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은 당해 조례에 규정된 급수공사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지방계약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급수공사와 상하수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6. 작업상 혼잡사유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전차공사(냉동·냉장시설 신축공사)와 금차공사(가공공장 건축공사)의 사업부지가 동일하고 건물간 이격거리가 4m로 협소하며, 각 건물사이에 공사를 위한 비계 설치 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가② 규정에 의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서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바,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히 동일부지 내라는 사유만으로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시공과정상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지 여부와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이상인지 여부등 사실 확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협상계약에서 심사위원관련 질의모음

1. 심사위원 구성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심사위원 구성·운영 방법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 2005.12.30) “Ⅲ”에 의하여 협상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른 자치단체, 국가의 계약담당자, 당해사업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자치단체, 국가의 공무원, 당해 사업분야 전문기관,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입니다.

2. 심사위원수 관련

〈질 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과 관련하여

- 질의1) 심사위원 수에 위원장이 포함되는지
- 질의2)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Ⅲ의 1의 라), 심사위원 대상(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Ⅲ의 1의 가)에는 계약담당자가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항목 중 객관적 지표는 계약담당자가 주관적 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토록 되어있는데, 이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수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심사위원수에 심사위원장은 포함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Ⅲ의 1의 라), 심사위원 대상(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Ⅲ의 1의 가)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자치단체는 경리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을 포함하여 7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경리관 외에 다른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심사위원수 조정

〈질 의〉

협상계약체결기준등 심사위원 3배수(교육시 2배수까지)를 채우기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로 줄일 수 방안은

〈회 신〉

- 행정자치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은 지식기반사업에 국한되는 협상계약 (예: 학술용역, 소프트웨어개발등) 기준이며 이외는 자치단체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에 의하여 자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위원 구성 시기

〈질 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심사위원의 구성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구성 시기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는 명확한 시기가 없는데 해설에 따라 공고 전에 선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제출 전까지만 선정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 2005.12.30)에 있어서 협상평가위원회는 사업부서 계약 의뢰시 3배수이상 심사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므로 제안서 접수마감이후에 협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제안서설명일(평가일) 3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안서를 송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객관적 평가 방법

〈질 의〉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자부 회계예규 제186호)에 따르면 기술평가의 주관적 평가의 심사위원과 가격평가와 기술평가의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를 평가할 계약담당자를 모두 심사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심사위원은 7인 내지 10으로 하여야 합니다.
- 만일 계약담당자가 지자체 내부직원 중 수인에게 계약담당자의 평가사무를 위임하였다면 위 내부직원 수인과 주관적지표를 평가할 외부직원을 합하여 7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 또한 위 사항대로 평가가 가능하다면 외부평가위원 3내지 4인으로도 평가가 가능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 최하점과 최고점을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에서 제외하는 경우 한 두명의 평가위원의 점수로 평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 2005.12.30)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의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평가하여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관적 평가는 7-10인으로 구성하되 경리관을 제외하고는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 및 최고·최저점수 평가위원은 배제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므로 평가위원 수는 적어도 7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불참위원을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심사위원회 의사정족수

〈질 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Ⅲ. 심사위원의 구성·운영"에 심사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5% 범위내에서 추가지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회의가 성립되기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이 성립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위원회 운영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협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이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추가지정 및 심사위원회 회의개최일 조정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심사위원의 중복임명

〈질 의〉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6호) 심사위원의 구성, 운영에서 보면 1.구성 "라"항 규정에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전문기관인 경우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 전산관련 정보화 위원(대학교수 등으로 구성)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행자부 예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도 협상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 심사위원회 구성 주관부서

〈질 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관련 예규에 의해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이때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회의 운영, 진행, 위원회 서무 업무 등)는 사업부서 소관인지 계약부서 소관인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진행 전반에 관하여 계약담당자가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계약의 일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심사위원후보자 3배수이상 추천(사업부서) - 심사위원예비명부 작성, 입찰 공고(계약부서) - 제안요청서 교부(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 - 제안서 접수(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 심사위원 추천(입찰참가자) - 제안서 송부(사업부서) - 제안서 심사, 협상순위 결정(심사위원회 -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 진행·입회) - 협상적격자 통보(계약부서) - 기술협상·가격협상(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계약체결(계약부서)의 순으로 하면 될 것이나,
-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일부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동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이를 참조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9. 심사위원회 인력풀 구성

〈질 의〉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지식기반관련, 예규 186호)에 의한 예비명부구성의 경우, 사업마다 매번 예비명부(실무상 최소21명 구성하려면 30명 정도는 위촉요청을 해야 합니다) 구성에 애로를 겪습니다. 또는 위원추천해주는 기관(학교, 공공, 전문기관)에서도 매우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관련인 경우 사전에 충분한 예비심사위원명부 인력풀(50명정도)을 구성하고, 개별사업 때마다 라운드로빈방식 등으로 공정성 있게 운영해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 2005.12.30) III-1-마의 규정에 의하여 3배수 이상의 심사위원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 인력풀제를 운영하는 것은 로비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주건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부득이 심사위원 인력풀명부를 작성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비심사위원을 추가하여 비밀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10. 심사위원장 임명

〈질 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보면 심사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경비)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안평가시 사업부서장이 분임경리관이 될 수

있는지

-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심사위원장을 사업부서장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를 추진하더라도, 심사위원장은 재무과장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는 바,
- 여기서 분임경리관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을 말하며, 귀 질의내용의 실·과장은 일반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를 취급하는 분임경리관을 말하므로 예규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11. 심사위원회 정족수 구성

〈질 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예규 제186호, 2005.12.30)의 심사위원의 구성은 영에 관련하여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정원의 추가 지정된 위원은 위원으로서 제안서 심사에 참석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지 불참위원에 대한 예비위원으로서, 심사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계약에 있어서 심사위원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협상계약체결기준 Ⅲ-1-나에 의하여 7~10인으로 하고, 불참자를 예상하여 정수의 15%이내에서 추가지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위원장,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 평가점수로 적용하므로
- 심사위원의 수는 최소한 5인 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불참자가 많을 경우 심사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심사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최소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추가 지정하여 심사위원명부를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12. 심사위원 제외

〈질 의〉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예규 제186호, 2005.12.30.)에 있어서 협상평가위원회는 사업부서 계약의뢰시 3배수이상 심사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심사위원 추천요건에 입찰 참가업체(대학교 교수)소속은 제외하도록 한 부분을 마련하지 않은 관계로 심사위원 다빈도 추첨시 입찰업체 소속 심사위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척 시킬 수 있는지
- 입찰참가업체의 참여 연구원이 심사위원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을 제척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이 입찰참가자 또는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사유를 명기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입찰참가업체의 참여연구원이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속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귀 질의와 같이 참여연구원이 심사위원에 영향을 미쳐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위원을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13. 소속공무원의 심사위원 선임

〈질 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 예규 '05.12.30. 제186호)에 의하면 심사위원을 당해 자치단체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는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사무소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보면은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사무소에 각각 경리관의 회계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구 본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을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나 경리관이 다른 보건소 또는 구의회사무국, 동사무소직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선정 하여도 예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 2005.12.30) III-1-가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계약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계약담당자, 전문성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경리관을 제외하고 심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